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	----

제출일자 : 2001. 12. 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규제완화방침 및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의 재원으로 보조하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법령의 근거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폐지하여 보조사업의 활성화와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교부조건을 폐지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01. 11. 10 ~ 11. 29(주민 제출의견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u>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 ----- ----- ----- -----</p> <p><u><삭 제></u></p>